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5. 29 (수요일), 13:00 ~ 15:30
- ▣ 장 소 : 경주 교원 드림센터
- ▣ 출석위원 : 김정배, 고희령, 김권구, 노중국,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 심의사항 】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 | | |
|----|---|
| 1 |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내 소방시설 구축 |
| 2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 국기계양대 설치 |
| 3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 다가구주택 신축 |
| 4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주차장 및 체육시설 조성 |
| 5 |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등 주변 남한산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
| 6 |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등 주변 중부 119 안전센터 신축 |
| 7 |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가주택 신축 |
| 8 |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 우물 정비 사업 |
| 9 |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주변 농가주택 신축 |
| 10 |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내 전등사 승방 신축 |
| 11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저온저장창고 설치 |
| 12 |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 13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 |
| 14 |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15 |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주변 전망데크 설치 |
| 16 |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2동) 신축 |
| 17 |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18 | 사적 제180호 경주 진평왕릉 주변 마을 진입도로 개설 |
| 19 |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주변 소매점 신축 |
| 20 |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주변 도시가스배관 매설 |

| | | |
|-----------------|--|--|
| 21 | 사적 제199호 서울 선릉과 정릉 내 우수 저류조 등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
| 22 |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산책로 내 휴게 데크 설치 | |
| 23 |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고분 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24 |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1) | |
| 25 |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2) | |
| 26 |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1) | |
| 27 |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2) | |
| 28 |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겸 다가구주택 신축 | |
| 29 |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고분군 주변 농가창고 신축 | |
| 30 |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31 |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주변 고달사 사찰 신축 | |
| 32 |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2동) 신축 | |
| 33 |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내 공중화장실 설치 | |
| 34 |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
| 35 |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 |
| 36 |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정자 설치 | |
| 【 검토사항 】 | | |
| 1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 |
| 【 보고사항 】 | | |
| 1 | 사적 제122호 창덕궁 경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계획 보고 | |
| 2 | 사적 제194호 서울 현릉과 인릉 내 현릉 동측 자연 계류 유실 법면 정비사업 보고 | |
| 3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 위임 확대계획 보고 |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3-07-001

1. 구리 동구릉 내 소방시설 구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내 소방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9년 6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번지(인창동 66번지)
- (3) 신청내용 <구리 동구릉 내 소방시설 구축>
 - 사업내용 : 구리 동구릉 경내 건원릉, 목릉, 송릉 소방시설 구축
 - 고건물(정자각, 비각, 수라청, 수복방) 내부·외부 불꽃감지기(37개) 설치
 - 소화전(900*550*1500mm, 8개소), 물탱크실(7.6평), 펌프실(4.6평, 2실)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속보설비 포함) 설치
 - 소화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용 배관·배선 설치
 - 사업기간 : 2013. 5월 ~ 2014. 12월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13.4.18./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강원대 교수 ○○○)
 - 고건물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과 지지금구는 건물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칠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겠음.

- 건물 내부 인입 배관은 트랜치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능역에 내부에 설치하는 소화전용 배관은 가급적 능역의 계류쪽으로 최대한 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겠음
- 목릉의 소화전 설치는 수라청 유구가 있는 쪽에 설치하였으면 함
- 심정과 물탱크실은 목릉 홍살문보다 아래쪽으로 설치하며, 은폐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 서울 한양도성 내 국기게양대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종로5·6가동 주민들이 깃대봉 복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 거양 등을 목적으로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 <국기게양대 설치>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123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국기게양대 1개소(높이 12m, 직경 10c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4.23./ 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한양도성이 위치하는 종로구 충신동 소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높이 12m, 직경 10cm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50년대 부터 1970년대까지 지역의 상징적인 대상으로 국기를 게양했다고 하나, 깃대봉의 축조연유, 축조시기, 형태, 깃발 등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한양도성의 문화재적인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한양도성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 서울 한양도성 내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기존 주택(지상 1층)을 철거하고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배○○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등 일원
- (3) 신청내용 <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21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21.90㎡
 - 건축면적 : 72.66㎡(21.98평)
 - 연면적 : 182.56㎡(55.22평)
 - 건축규모 : 지상 4층(최고높이 10.6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5.1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서울 삼선동 소재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기존의 1층 규모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72.66㎡, 연면적 182.56㎡, 최고높이 12.1m, 4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 주택의 뒷부분은 5m 규모의 옹벽이 있으며, 옹벽 상부에 체성부의 탐방로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 신축하려고 하는 곳이 보호구역 내라고 하여도 옹벽에 의해 단절되어 있으며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주택의 신축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체성부 연접 경관의 유지를 위하여는 현 탐방로의 난간 높이 이하로 건축될 필요가 있으며, 지붕도 경사지붕으로 마무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한양도성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4. 서울 풍납동 토성 내 주차장 및 체육시설 조성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 내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풍납토성 성곽과 인접한 지역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주차장 및 체육시설 조성>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0(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연장 68m × 폭 9.3m~15m
 - 시설내용 : 주차장 53면(보도블럭), 운동기구 8개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및 주변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5. 남한산성 등 주변 남한산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주변 남한산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주변에 남한산 초등학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외 일원)
- (3) 신청내용 <남한산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73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이격 / 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99㎡, 연면적 119.53㎡
 - 1동, 지상1층, 지하 1층, 한식목조(지상), RC조(지하)
 - 정면 5칸×측면 3칸, 각기둥, 굴도리, 우진각지붕, 최고높이 6.34m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시굴조사 후 재검토

6. 남한산성 등 주변 중부 119 안전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주변 중부 119 안전센터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주변에 중부 119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외 일원)

(3) 신청내용 <중부 119 안전센터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239-1, 230-3, 234-3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0m이격 / 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938㎡, 건축면적 413.63㎡, 연면적 599.98㎡
 - 지하 1층, 지상 2층, RC조(지하), 한식목조(지상)
 - 최고높이 9.0m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건물의 규모, 형태 등을 일부 조정하여 재검토
(설계도서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

7.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가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 (3) 신청내용 <농가주택 신축>
 -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972-13(지정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격)
 - 사업내용
 - 규모 : 면적 67.56㎡, 높이 4.25m
 - 구조 : 경량철골조
 - 기타 : 단독정화조 5인용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8. 진주성 내 우물 정비 사업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 우물 정비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주성 내 우물 정비 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진주성(사적 제118호)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490-5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성내 우물 정비 사업>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490-5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발굴 우물 정비 및 진입로 포장 등
 - 배치계획 : 정비 범위 15m×15m 정방형, 진출입로 2개소 설치
 - 유구정비 : 정자석(칭석) 설치, 기존 배수로 정비, 우물 주변 박석 설치
 - 안전계획 : 관람객 낙하 방지용 시설물, 우물 덮개 설치
 - 기타 : 주변 펜스 및 안내판 설치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2013.5.9./문화재위원 ○ ○ ○)
 - 우물 내부 구조 보강을 위한 시설로 흙관보다 목재 통나무로 만들어 보강하는 편이 좋으며, 우물 상부 井자 시설은 규격은 계획대로 하되 석재의 두께와 가공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우물 주변의 마감은 박석을 사용하되, 가장자리 마감석은 규격을 크게 하는 편이 좋겠음. 또한 우물 주변 배수를 위한 바닥 경사는 8%보다 4% 정도로 함이 좋겠음

(2) 추진경과

- 2012.5.9~2012.6.7 진주성 내 우물 시굴조사
- 2012.5.31 진주성 내 우물 복원에 따른 문화재 시(발)굴조사 자문회의 개최(1차)
- 2012.7.30~2012.9.10 진주성 내 우물 복원에 따른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
- 2012.9.6~2012.9.7 진주성 내 우물 복원에 따른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개최(2차)
- 2012.11.30 진주성 우물 정비방안 공청회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문화재청 설계검토 후 승인)

9. 진도 남도진성 주변 농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도 남도진성 주변 농가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진도 남도진성(사적 제127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외
- (3) 신청내용 <농가주택 신축>
 -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304-1(문화재 이격거리 37m 이격)
 - 사업내용
 - 규모 : 면적 69.3㎡, 높이 5m
 - 구조 : 조적조, 맞배지붕(칼라강판 기와)
 - 기타 : 단독정화조 5인용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0. 강화 삼랑성 내 전등사 승방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내 전등사 승방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전등사의 승방을 신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랑성(사적 제130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3) 신청내용 <승방 신축>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108.72㎡, 연면적 262.64㎡, 1동
- 지하 1층(RC조) 지상 1층(한식목조), 팔작지붕, 홑처마, 최고높이 9.935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5.10/문화재전문위원 ○ ○ ○)

- 본 건물은 전등사 대웅전이 있는 사역의 동쪽에 승방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경사진 임야지에 석축으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근래에 신축된 2층의 건물(1층 공양간, 2층 템플스테이)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신청건물은 중심사역에서 약간 벗어난 측면에 해당되어 잘 보이지 않으나, 삼랑성 동문에서 진입하면서 수목 사이로 일부 보이는 2층 건물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1. 강화산성 주변 저온저장창고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저온저장창고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 기존 주택 내에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저온저장창고 설치>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문리 632-2(문화재구역 인접, 1구역)
 - 사업내용
 - 저온저장창고 면적 8㎡(4m×2m), 높이 2.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12. 강화 고려궁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로교통환경 개선, 교통정체 해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고려궁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회의('12.5.9)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발굴조사 완료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 (3) 신청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성광교회~용흥궁 공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 4구역)
 - 사업내용
 - 도로 개설 L=0.4m B=12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5.04/문화재위원 ○ ○ ○, ○ ○ ○)
 - 현행 도로를 확장·정비하고자 하는 신청사업은 문화재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대상지가 강화 고려궁지와 200m 가량 이격되어 있으나, 현재의 고려궁지는 그 지정범위가 궁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변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사업신청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유물의 성격 규명으로 고려궁지와 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전면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발굴조사결과

-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2010.4.6 / 강화군)
 - 사업명 : 성광교회~동문(2~4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검토결과 : 사업시행전 입회조사 실시
- 발굴완료에 따른 보존대책 통보(발굴제도과/2011.12.22)
 - 1차 조사지역은 별도발굴을 득하여 발굴토록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여부 재검토
 - 2차 조사지역 중 지정문화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
 -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문화재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수
 - 조사내용에 대한 기록·보존 철저히 할 것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2012.8.10)
 - 1호와 5호 건물지는 성격상 측면1칸의 국가적 건물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5호 건물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구의 구분을 위한 추가 조사(기록을 철저히 할 것).
 - 현재 상황에서, 남~북상으로 조사한 지점에서 확인된 유구는 북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만큼, 확보된 구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유구의 지속성을 확인 후 전체 유구의 처리 방향을 결정
 - 정밀 발굴조사범위(320㎡)와 추가 발굴조사범위(360㎡)를 제외한 과거 조사지역은 활용해도 무방함.
 - 조사 방향과 보존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유적의 안전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전체적인 발굴조사 후 재검토

13. 제주 삼성혈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삼성혈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성혈(사적 제134호)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13 일원
- (3) 신청내용 <관광숙박시설 신축>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776-31(문화재 이격거리 370m/5구역)
 - 사업내용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높이 31.5m)
 - 면적 : 부지 248㎡, 건축면적 150.15㎡, 연면적 1,432.19㎡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건물의 외관색상 및 재질 등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

14.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제137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83번지(문화재 이격거리 50m/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660㎡, 건축면적/연면적 84.84㎡, 1동, 1층, 일반목구조, 최고높이 5.3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5. 김포 문수산성 주변 전망데크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주변 전망데크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문수산성 주변에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하여 전망데크를 설치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문수산성(사적 제139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1번지
- (3) 신청내용 <전망데크 설치>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3번지(문화재구역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60㎡, 1동, 지상 1층, 최고높이 2.1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6.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2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2동)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회의('12.12.12)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어, 계획 변경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외
- (3) 신청내용 <단독주택(2동) 신축>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19번지(문화재 이격거리 344m/1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1차 신청내용 (‘12.12.12/부결) | 2차 신청내용 | 비 고 |
|------|---------------------------|---------|------------|
| 대지면적 | 2,850㎡ | 좌동 | - |
| 건축면적 | 385.6㎡ | 199.08㎡ | 감) 186.52㎡ |
| 연면적 | 385.6㎡ | 294.8㎡ | 감) 90.8㎡ |
| 규모 | 2동, 1층 | 2동, 2층 | 증) 1층 |
| 구조 | 경량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 - |
| 최고높이 | 4.9m | 7.9m | 증) 3.0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7.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주변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옥산서원 경계에서 약 80m 이격된 1구역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 2012년 9차 위원회('12.09.12) 심의부결 후 재보완 신청한 사항임
<당시 사업 신청개요>
 - 단독주택 : 경량철골, 한식기와/지상1층/연면적 96.49㎡/높이 6.7m
 - 음식점 : 경량철골, 한식기와/지상1층/연면적 136.0㎡/높이 6.2m<심의결과> : 부결(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옥산서원(사적 제154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건립>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09(약 80m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가동 (단독주택)]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기와형 칼라강판(경사식)
 - 건축규모 : 지상1층, 연면적합계 96.49㎡
 - 최고높이 : 4.88m(당초 6.7m)

[나동 (일반음식점)]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기와형 칼라강판(경사식)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연면적합계 136.0㎡
- 최고높이 : 4.88m(당초 6.2m)

[석축쌓기] 석축쌓기 : L=57m, H=0.6m~1.0m

[흙 쌓기] 대지내 성토 : 0.2m~1.3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05.01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주 옥산서원에서 서북쪽으로 80여m 이격된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에 단독주택(건축면적 96.49㎡, 높이 4.88m, 1층, 경사지붕)1개 동과,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36.0㎡, 높이 4.88m, 1층, 경사지붕)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문화재에서 인지되고 규모가 크며 음식점 등이 입지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8. 경주 진평왕릉 주변 마을 진입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0호 「경주 진평왕릉」 주변에서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진평왕릉 경계에서 약 350m 이격된 2구역에서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진평왕릉(사적 제180호), 전 홍유후 설총묘(경상북도 기념물 130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608 외
- (3) 신청내용 <마을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421 외 일원(약 350m 이격, 2구역)
 - 사업내용 : L=95m, B=6.0m
 - 토공 : 절토 226m³, 성토 131m³, 사토 95m³
 - ※ 터파기 최대 깊이 : 80cm
 - 포장공 : 콘크리트 478m²
 - 배수로 : 콘크리트 플룸관 L= 76m(단위규격 : 460*560)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04.25 / 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경주 진평왕릉에서 동측으로 350여m 이격되고 전 홍유후 설총묘(시·도 기념물 130호)에서 북측으로 30여m 이격된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에 폭 6m, 길이 95m의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진평왕릉에서 인지되지 않으나 전 홍유후 설총묘(시·도 기념물 130호)에 연접한 봉분 뒤로 설치되어 시·도 기념물인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변의 고분군과 연접하여 공사가 시행될 경우,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경상북도(문화재과, 문화재위원회) 의견

- 관련 문화재 : 경상북도 기념물 제30호 전 홍유후 설총묘
- 신청지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으로, 신청위치가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도로개설 위치를 녹지지대(경주KB팬션) 쪽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9. 경주 신무왕릉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주변에서 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신무왕릉 경계에서 약 450m 이격된 1구역에서 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 2011.07.13(사적분과 8차 위원회) 심의 부결 후 재보완 신청한 사항임
<당시 사업 신청개요>
 - 휴게음식점·창고 : 지상1층, 2동, 연면적합계 228m², 한식철콘조, 한식기와
- <심의결과>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신무왕릉(사적 제185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660 외 일원
- (3) 신청내용 <소매점 신축>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710-10(약 45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당초('11.07.13 부결) | 변경 | 비고 |
|-----------|--|--|----|
| 사업자 | 최○○ | 김○○ | 매매 |
| 대지면적 | 3,763m ² (3필지) | 1,847m ² (1필지) | |
| 건축규모 | 지상 1층, 2동 | 지상 1층, 1동 | |
| 건축면적(연면적) | 228.32m ² (228.32m ²) | 246.40m ² (246.40m ²) | |
| 건축구조 | 한식 철콘조, 한식기와 | 한식 철콘조, 한식기와 | |
| 최고높이 | 8.75m | 7.80m |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05.01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신라 신무왕릉에서 서측으로 450여m 이격된 현 주유소 건물 뒤편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에 건축면적 280㎡, 높이 7.8m, 1층, 콘크리트조 전통한옥 형식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신라 신무왕릉에서 인지되지 않고 배치가 주유소 건물 뒤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전통건축의 형태를 띠고 있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단, 건물의 규모가 크므로 건물을 작은 규모로 나누어 전통적인 배치를 유지하는 계획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건물 배치 등에 대한 설계도서 보완 후 검토·시행

20.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주변 도시가스배관 매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주변에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군 소재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주변 지방도 333호선 도로 지중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263-1번지 이화산업 본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는 사업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사적 제195호)
 -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 (3) 신청내용 <도시가스배관 매설>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하리31-7에서 왕대리 1044-1번지 구간(1~4구역)
 - 사업내용
 - 도시가스배관 매설 : 총 연장 6.8km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911km 굴착 (1구역 2,165m, 2구역 393m, 3구역 206m, 4구역 147m)
 - 토 공 : 터파기 2,385.7m³(깊이 1.5m, 너비 상부 1.4m- 하부 1.0m)
 - 가스관 : PLP강관(직경 200mm)
 - 포장공 : 아스콘포장복구 6,000.104m²

라. 참고사항('13. 5. 10./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도시가스관의 매설로 인한 영릉·녕릉의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나, 허가받지 않고 시행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가스관 매설 구간은 세종대왕의 천장 시 개설되었을 나루터 시설이 있던 곳으로 판단되므로 굴착 시 관계 전문가의 입회하여야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구간은 나루터 등 시설 유존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시굴조사 필요

21. 서울 선릉과 정릉 내 우수 저류조 등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사적 제199호 「서울 선릉과 정릉」 내에 우수 저류조 등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집중호우 시 지대가 낮은 선·정릉 일대에 상습적으로 상가 및 주택지 침수 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건은 '12.11.14.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12.11.28)한 사항으로, 허가조건에 따라 대상지를 시굴 조사한 결과('13.4.9)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본 사업 대상지에 있는 조경 수목에 대한 벌채 및 식재 등의 조경공사가 추가되어 기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선릉과 정릉(사적 제199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1번지
- (3) 신청내용 <우수 저류조 및 지하 주차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1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설치면적 : 1,200㎡)
 - 설치내용

| 공종별 | 당초 | 변경사항 | 비고 |
|-------|---------------|--|---------------------|
| 우수저류조 | B20XL60XHe6.1 | 좌동 | 유입관거:800mm, L=250m |
| 지하주차장 | B20XL60XHe3.0 | 좌동 | 유입관거:1000mm, L=240m |
| 조경공사 | - | 지장목 벌채 : 33주(외래수종) 지장목 이식 : 물오리나무 등136주 빗물저류조 상부 녹지대 복원 식재 -교목 : 소나무외 7종124주 -관목 : 사철나무외 2종 450주 -잔디식재(평폐) : 1,183㎡ | |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11.12.14 심의결과,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과 강남구청 협의 후 재심의
- '12.01.11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 '12.09.21 우수 저류조 설치구역 시굴조사 전문가 검토 회의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2.10.25 허가사항 변경허가 관련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위원 ○○○)
- '12.11.14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 '13.04.09 시굴조사완료(출토 유구 및 유물 없음)
-조사기관:(재)한백문화재연구원

(2) 조경 식재 계획

- 사업대상지 내 지장수목 처리수량

| 지장수목 현황 | | 처리계획 | 비고 |
|---------|--------|------|-----------------------|
| 수종 | 수량(주) | | |
| 교목 | 사방오리나무 | 28 | 임목폐기 |
| | 중국단풍 | 1 | 임목폐기 |
| | 일본목련 | 4 | 임목폐기 |
| | 물오리나무 | 49 | 이식 |
| | 은행나무 | 5 | 이식 |
| | 참나무 | 1 | 이식 |
| | 귀룽나무 | 2 | 이식 |
| | 회화나무 | 3 | 이식 |
| | 느티나무 | 3 | 이식 |
| 관목 | 개나리 | 34 | 이식 |
| | 쥐똥나무 | 39 | 이식 |
| 합계 | | 169 | 임목폐기 : 33주, 이식 : 136주 |

○ 빗물저류조 상부 녹지대 복원식재 계획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상록 교목 | 소 나 무 | H3.0×W1.5×R10 | 주 | 8 | |
| | 소 나 무 | H4.0×W2.0×R15 | 주 | 6 | |
| | 소 나 무 | H5.0×W2.5×R20 | 주 | 5 | |
| | 소 계 | | | 주 | 19 |
| 낙엽 교목 | 때 죽 나 무 | H3.0×R8 | 주 | 29 | |
| | 배 룡 나 무 | H2.0×R5 | 주 | 11 | |
| | 벽 오 동 | H3.5×B6 | 주 | 6 | |
| | 산 사 나 무 | H3.0×R8 | 주 | 13 | |
| | 단 풍 나 무 | H2.5×R8 | 주 | 19 | |
| | 회 화 나 무 | H4.0×R8 | 주 | 7 | |
| | 소 계 | | | 주 | 95 |
| 교 목 계 | | | 주 | 114 | 뒷면 계속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상록 관목 | 사 철 나 무 | H1.5×W0.5 | 주 | 100 | |
| | 소 계 | | 주 | 100 | |
| 낙엽 관목 | 국 수 나 무 | H1.2×W0.8 | 주 | 50 | |
| | 쥐 똥 나 무 | H1.5×W0.4 | 주 | 300 | |
| | 소 계 | | 주 | 350 | |
| 관 목 계 | | | 주 | 450 | |
| 지피 | 잔 디 (평 폐) | 0.3×0.3×0.03 | m ² | 1,183 | |
| 낙엽 교목 (이식) | 물 오 리 나 무 | R24 | 주 | 1 | D4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12 | 주 | 1 | D9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23 | 주 | 1 | D18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25 | 주 | 1 | D19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18 | 주 | 1 | D23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22 | 주 | 1 | D31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26 | 주 | 1 | D32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38 | 주 | 1 | D36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26 | 주 | 1 | D40 재이식 |
| | 물 오 리 나 무 | R24 | 주 | 1 | D49 재이식 |
| | 소 계 | | | 주 | 10 |
| 교 목 이 식 계 | | | 주 | 10 |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2. 김포 장릉 주변 산책로 내 휴게 데크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의 산책로 내에 휴게 데크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시 소재 장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20m 이격된 1구역에서 휴게 데크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산141-1)
- (3) 신청내용 <산책로 휴게 데크 설치>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산31번지(1구역)
 - 사업내용
 - 목재데크 설치 : 면적 20㎡(1동)
 - 최고높이 : 0.4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05.09/문화재전문위원 ○ ○ ○)
 - 해당지역은 세계문화유산 김포장릉(사적 제202호)지구의 주산 북측지역으로 천연 산림 생태계가 양호하고 경사도 급하여 보존가치가 높음
 - 현재 군사시설과 상수저류조지역이 연접하여 보호가 요구되며, 접근로가 불량하고 위험함
 -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보존·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3. 영주 순흥 벽화고분 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고분」 주변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순흥 벽화고분 주변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박○○

(2) 대상문화재명

- 영주 순흥 벽화고분(사적 제313호)
- 영주 순흥 어숙묘(사적 제238호)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95 외

(3) 신청내용 <단독주택 건립>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500 (연접, 1구역)

○ 사업내용

[가동]

- 구조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1층, 1동, 건축면적 90.27㎡

[나동]

- 구조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용도 : 단독주택 및 창고
- 규모 : 지상1층, 1동, 건축면적 55.8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04.19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순흥 어숙묘에서 280여m 이격되고 순흥 벽화고분 지정구역에 연접하는 1구역에 건축면적 90.27㎡, 높이 4.85m 경사지붕 1개동, 그리고 건축면적 55.8㎡ 높이 4.85m, 경사지붕 1개동 합 2개동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로서 문화재에서 인지되고 주변 지형의 변화가 우려되는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1)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허○○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도척면, 실촌면, 남중면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633, 634(문화재구역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1,695㎡, 건축면적/연면적 120㎡, 1동, 1층, 최고높이 4.0m
- 샌드위치판넬 마감, 경량철골조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5.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2)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09년에 3인 이상 영향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당초보다 사업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함
- 지난 사적분과 회의('12.8.8)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어, 설계변경 후 재신청한 사항임
- ※ 현상변경 허가신청(2차) 관련 현지조사결과('12.10.26), 기 건축허가사항과 다르게 건설공사를 일부 시행한 것이 확인되어, 광주시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 사건처분('13.3.6, 벌금 5백만원)되었으며, 현재 대지 조성 및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황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 외 2인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도척면, 실촌면, 남종면
-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02-19 외 4필지(문화재 이격거리 32m/1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2009년 사업내용 | 1차 신청내용 ('12.8.8/부결) | 3차(금차) 신청내용 | 비고 (2009년 대비) |
|------|------------|----------------------|-------------|---------------|
| 부지면적 | 6,275㎡ | 좌동 | 좌동 | - |
| 건축면적 | 990㎡ | 1,522㎡ | 1,275㎡ | 증 285㎡ |
| 연면적 | 990㎡ | 1,522㎡ | 1,275㎡ | 증 285㎡ |
| 규모 | 3동, 지상1층 | 5동, 지상1층 | 4동, 지상1층 | 증 1동 |
| 최고높이 | 8.1m | 9.8m | 8.1m | - |
| 계획고 | 82.5~91m | 80~85m | 80~85m | 감 2.5~6m |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2009.12.20 : 근린생활 신축사업 건축허가 신청
 - 문화재 영향성 검토에 의해 입회조사 조건부
- 2010. 2월 : 입회조사 전 현장점검시 추정 석곽묘 확인
- 2010. 3~4월 : 시굴조사 및 지도위원회 개최
 - 발굴조사 실시 결정
- 2010. 4~7월 : 발굴조사 실시
- 2010. 8.24 :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최
 - 석실묘 중 형태가 잔존한 2기에 대하여 이전 복원할 것
- 2010. 9~11월 : 석실분 이전 등 부분완료 조치
- 2010.11.16 :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건축허가
- 2010.11.25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사업대상부지 1구역(보존구역) 해당됨
- 2012. 8. 1 : 건축높이, 면적 증가로 인한 현상변경 신청
- 2012. 8. 8 : 문화재위원회 심의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012.10. 4 : 현상변경 신청(2차)
- 2012.10.26 : 현지조사 실시
- 2012.11. 1 : 현상변경 허가신청 반려
 - 현지조사결과 기 허가사항과 다르게 건설공사를 일부 시행한 것이 확인되어 허가 신청 반려
- 2013. 3. 6 :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처분(수원지방검찰청)
 - 구약식(벌금 5백만원)
- 2013. 4.12 : 현상변경 신청(3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6.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1)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장○○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531, 558-2번지(문화재 이격거리 132m)
 - 사업내용
 -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 : 348.00㎡/717.17㎡/176.4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1.5m(평지붕)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4.26/문화재전문위원 ○○○)
 - 현재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현지조사를 통해 개별 검토한 바, 주변은 2층 규모(6~7m 규모)로 경사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현황과 지형을 고려할 때 8.5m 규모에 경사지붕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며, 합필에 의해 단일 건축물의 규모가 크므로 평면·입면상의 분절을 통해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연구가 필요함
 - 또한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는 유물 산포지로서 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7.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2)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67번지(문화재 이격거리 74m)
 - 사업내용
 -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 : 224.3㎡/354.65㎡/127.67㎡
 - 규모 : 지상 4층, 높이 13.3m (평지붕)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4.26/문화재전문위원 ○○○)
 - 현재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현지조사를 통해 개별 검토한 바, 주변은 2층 규모(6~7m 규모)로 경사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신규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역사문화환경의 보존보다는 개발을 촉진할 우려가 있음
 - 주변의 현황과 지형을 고려할 때 8.5m 규모에 경사지붕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며,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는 유물산포지로서 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8.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겸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겸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겸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외 1인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겸 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589번지(문화재 이격거리 152m)
 - 사업내용
 -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 : 133.00㎡/203.83㎡/80.18㎡
 - 규모 : 지상 3층, 높이 11m (평지붕, 일부 경사지붕)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4.26/문화재전문위원 ○○○)
 - 현재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현지조사를 통해 개별 검토한 바, 주변은 2층 규모(6~7m 규모)로 경사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현황과 지형을 고려할 때 8.5m 규모에 경사지붕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며,
 - 본 부지는 비지정된 체성부와 연접하여 있으며,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내는 유물산포지로서 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9. 창원 다호리고분군 주변 농가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고분군」 주변 농가창고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원 다호리고분군 주변 농가창고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다호리고분군(사적 제327호)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다호로 237-3번지 일대
- (3) 신청내용 <농가창고 신축>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33-6, 33-10번지
(문화재 이격거리 140m/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 : 908.00㎡/180.00㎡
 - 규모 :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4.8m(높이)×20m(길이)×9m(폭)
 - 용도 : 창고시설(농가창고)
 - 마감재료 : 샌드위치판넬(외부 : 은회색 / 지붕 : 주황색)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2013.5.13./문화재위원 ○○○)
 - 상기 구역은 1구역이며 건축 내용은 신축에 해당하므로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0. 파주 수길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시 수길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412m 이격된 1구역에서 단독 주택 3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2.02.08.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금회 신청지와 인접한 1구역에 대해 단독주택 신축(2동)을 조건부허가(사업부지의 절토 최소화)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1-15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4-1, 203(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2,709㎡, 건축/연면적 312.66㎡/312.66㎡
 - 3개동, 1층, 최고높이 6m,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외부마감)
 - 절토 8,775.85㎡, 성토 367.35㎡, 대지경계 옹벽 설치(최고높이 4.4m)
 - 주차 : 6대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05.09/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지역은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지역의 남동향 400m지역임
 - 소령원·수길원 좌청룡 용맥(능선)이 막고 있으며, 두 개의 능선 너머에 위치하여 해당 문화재의 경관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됨
 - 허가 대상지 능선의 스카이라인 보존이 요구되며 건물 높이가 능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해당 대상지는 경사가 급한 편으로 절개지를 2~3단으로 석축을 쌓아 구조 및 경관보존을 할 것
- 소령원의 전면 우측경관으로 능선 스카이라인을 보존할 것

(2) 지자체의견('13.04.15/파주시장)

- 금번 사업 신청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구역(심의구역)에 주택 3동을 신축하는 건으로 절·성토가 최대 약 9미터 발생하는 건임
- 2012년 2월 인접지번(산4-2번지)에 주택을 허가받아 공사 중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 결과('12.2.8) 조건부허가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부지의 절토량 최소화

31. 여주 고달사지 주변 고달사 사찰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주변 고달사 사찰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고달사지 주변에 고달사 사찰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회의에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세 차례('12.8.8/'12.10.10/'13.1.16) 부결되어, 설계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장○○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고달사지(사적 제382호)
 -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 외
- (3) 신청내용 <고달사 사찰 신축>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산48-1번지(문화재구역과 인접/1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1차 신청내용 (‘12.8.8/부결) | 2차 신청내용 (‘12.10.10/부결) | 3차 신청내용 (‘13.1.16/부결) | 4차(금번) 신청내용 | 비고 |
|--------------|--|---------------------------|--------------------------|-----------------------------------|----|
| 사업면적 | 4,950㎡ | 4,000㎡ | 3,672㎡ | 3,672㎡ | |
| 건축면적/ 연면적 | 503.58㎡ | 좌동 | 좌동 | 394.38㎡ | |
| 건축규모 | 1층, 5동 (대웅전, 적묵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 좌동 | 좌동 | 1층, 4동 (대웅전, 정묵당, 종무소, 산신각) | |
| 최고높이 | 7.96m(대웅전) | 좌동 | 좌동 | 좌동 | |
| 절토량 | 4,925.22㎡ | 6,061㎡ | 6,061㎡ | 5,758㎡ | |
| 성토량 | 5,799.55㎡ | 8,598㎡ | 5,496㎡ | 6,156㎡ | |
| 기타 | 문화재구역내 하천 점용 및 진입도로 개설 | 기존도로 확장 및 정비 | 좌동 | 좌동 | |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여주군)

- 본 허가를 신청한 현 고달사는 여주군청이 1989년 고달사 법당 철거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진 철거 및 2차례 계고장을 발송하였지만 자진 철거를 거부함으로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3년 대법원에서 건물 철거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2차례 강제 철거를 시도한 바 있었으나, 철거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확정 판결 주문이 없기 때문에 철거 보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음
- 특히, 1973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1990년도에 법원에 등기를 필한 ‘대한 불교조계종고달사’ 소유의 유허가 건축물을 보상금 지급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확신 부족 때문에 강제 철거하지 못한 채, 발굴 조사 등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주군청이 고달사 법당 건물 터 매입 이전부터 존재한 법당 건물과 쉼터이너 등 무허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 후에 본 신청지를 현 위치에서 최대한 이격하고 사적지 보호구역과의 사이에 가시권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 수림대를 조성하며 기존의 현황도로를 사찰 진출입도로로 이용한 대응전 등을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면 여주군의 장기 고질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 그리고, 고달사지를 방문하는 관람객과 참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없는 현재의 고달사지 가까운 곳에 볼거리 및 음수대와 쉼터 등 휴게 공간이 조성되고 주변 산림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여주군의 대표적인 불교문화 관광상품 콘텐츠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행정당국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불교 문화재 훼손과 도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고달사지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 고달사지 사적지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건축물이 아닌 불교 사찰건축물이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2.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2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2동)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천 설봉산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회의('13.4.10)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어, 설계변경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유○○, 양○○
- (2) 대상문화재명 : 이천 설봉산성(사적 제423호)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2동) 신축>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164-21임, 164-23임, 산18-21임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구분 | 1차 신청내용 ('13.4.10/부결) | 2차 신청내용 | 비고 |
|------|--------------------------|---------|------------|
| 대지면적 | 12,175㎡ | 10,646㎡ | 감) 1,529㎡ |
| 건축면적 | 760㎡ | 좌동 | - |
| 연면적 | 760㎡ | 좌동 | - |
| 규모 | 2동, 지상 1층 | 좌동 | - |
| 구조 | 경량철골조 | 좌동 | - |
| 최고높이 | 5.6m | 좌동 | - |
| 성토량 | 67,362㎡ | - | 감) 67,362㎡ |
| 절토량 | 6,652㎡ | 96,211㎡ | 증) 89,559㎡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3. 보령 충청수영성 내 공중화장실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오천항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 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일원
- (3) 신청내용 <공중화장실 설치>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52-1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간이식 화장실 1식(폭 2.8m×길이 10.0m×높이 3.3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4. 구리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1.9.18. 구리 동구릉 연지지역을 문화재 구역(사적)으로 추가지정(3,595㎡) 함에 따라,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신청 건은 '13.04.10.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후 재검토'로 보류되어 재 부의하는 사항임
 - '13.05.09 사적분과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 <구리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구분 | 허용기준 | | 도시계획 조례 | 비고 |
|-----|-----------------------------|------------------------------|----------------------------|------|
| | 평스라브 | 경사지붕(3:10) | | |
| 1구역 | ○ 보존구역 | | 자연녹지지역 1종 일반 주거구역 | 현행유지 |
|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 | |
|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 | |
| 4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 1·2종 일반 주거구역 | |
| 5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29m이하 (9층 이하) | | 1·2·3종 일반주거구역 일반상업지역 | |

| 구분 | 허용기준 | | 도시계획 조례 | 비고 |
|---------------------|--|-----------------------------|---------------------------------|---------------|
| | 평스라브 | 경사지붕(3:10) | | |
| 1구역 | ○보존구역 | | 자연녹지지역 1종 일반 주거구역 | 현행유지 |
|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 | |
|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 | |
|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 1·2종 일반 주거구역 | |
|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9m이하 (9층 이하) | | 1·2·3종 일반주거구역 일반상업지역 | |
|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45m이하 (15층 이하) | | 1·2·3종 일반주거구역 일반상업지역 | |
| 7구역 (신설)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 | 1종 일반 주거구역 일반상업 유통상업지역 | 구리시(안) |
| 공통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용도제한 : 위험물 저장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정비소 및 판매소, 골프연습장, 가설 건축물 ○과도한 성·절토 금지 | | | |

라. 참고사항

(1) 사적분과 제2차 소위원회 검토 의견

○ 소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 2013.05.09(목)/15:00

- 참석자 : ○○○ 위원장, ○○○ 위원, ○○○ 전문위원

(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추가 지정 내용

| 문화재명 | 기 지정 면적 | 추가지정 면적 | 지정후 면적 (보호구역 포함) | 소재지 | 관리단체 | 비 고(근거) |
|----------------------|--------------------|-----------------------------|---------------------|-----------------------------|-------|---|
| 구리 동구릉 (사적 제193호) | 41필지 1,966,080㎡ | 8필지 3,595㎡ | 49필지 1,969,675㎡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9-10번지 외 | 문화재청장 | 문화재청 고시 제2011-127호, (2011.08.19.) |

※지정사유 : 세계유산인 동구릉의 진정성 회복과 능제복원 정비를 위하여 연지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3) 구리시 의견(2013.03.27)

가) 허용기준 4구역/연지지역 주변

○ 사적 제193호 동구릉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2009년 7월 29일
기 고시 되었고, 2011년 8월 19일 연지지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허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으로,

- 추가 지정된 연지는 원형이 복원되지 않아 현재 연못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를 위한 당초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이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음
- 연지주변의 LPG 충전소, 자동차 공업사 및 자동차 매매상사, 마을버스 차고지 등은 2009년 당초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이미 4구역안에 존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주변 여건이 변동된 내용이 거의 없으므로 기존의 허용기준 4구역은 현행대로 유지

나) 허용기준 7구역(신설)

-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문화재전문가 자문회의(2013.3.28.)시 연지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확대지역을 제7구역으로 신설하여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되 건축물 높이 54m (18층 이상)을 초과시는 문화재심의를 받도록 함”으로 지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구리시 자문회의 의견(2013.3.25./ 문화재위원 이상해, 전문위원 이창환)

- 연지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확대구역은 제7구역으로 하여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되 건축물 높이 54m(18층)을 초과시에는 문화재심의를 받도록 함
- 2011년 8월 동구릉 연지지역 추가 지정 시 문화재청에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연지지역을 추가지정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기존의 규제내용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과 문화재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에 노력할 것임”을 알려줌에 따라[문화재청 보존정책과-4532(2011.8.30)] 구리 동구릉 연지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확대지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7구역으로 하여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연지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확대지역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로 인하여 경관차단 효과를 보이는 지역으로 구리 동구릉과의 영향성이 낮다고 사료됨

(4) 구리시의회 의견(2013.3.19.)

- 2011.8.19 추가지정된 구리 동구릉 연지지역의 원형복원 필요
 - 문화재청에서 연지지역의 토지매입 및 원형복원
 - 연지를 통과하는 국도43호선 구간을 고가도로화

(5) 현지조사의견(2013.3.28./문화재위원 ○○○·○○○)

- 허용기준 변경의 사유는 연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500m 기준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검토됨

- 한진 아파트 지역은 왕숙천을 가로지르는 동서 기간도로 북측지역의 연장 지역은 5구역으로 편입함이 좋겠음
- 롯데마트지역 남북 기간도로의 서측지역에서 늘어나는 대상지역은 6구역으로 편입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역으로 늘어나는 지역은 기 승인('12.12.12.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된 18층(54m미만)을 감안 7구역으로(18층 기준) 별도 지정하여 규제토록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심도있는 검토 필요

35. 구리 동구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286m 이격된 곳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신청 건은 '13.04.10.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심의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재부의하는 사항임
 - '13.05.09 사적분과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 <공동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04번지 등 11필지
 - 5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29m, 9층 이하
 - 사업내용

| 구분 | 1차('12.4.18) | 2차('12.6.13) | 3차('13.3.13) | 4차('13.4.10) | 금회('13.5.15) |
|------|-------------------------|-------------------------|-------------------------|--------------|--------------|
| 신청면적 | 20,081㎡ | 좌동 | 20,183㎡ | 좌동 | 좌동 |
| 건축면적 | 2,576.72㎡ | 2,512.37㎡ | 4,277.99㎡ | 좌동 | 좌동 |
| 연면적 | 57,852㎡ | 49,757.59㎡ | 44,120.90㎡ | 좌동 | 좌동 |
| 규모 | 6동 지하1층, 지상18~25층 | 5동 지하1층, 지상16~23층 | 9동 지하1층, 지상 9~18층 | 좌동 | 좌동 |
| 건물높이 | 75.7m | 67.8m | 54.8m | 좌동 | 좌동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03.28./문화재위원 ○○○·○○○)

- 해릉, 승릉지역에서 본 대상 APT는 기존 한진아파트가 25층으로 건립되어 있으나 나란히 새롭게 높은 APT건립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
- 참고사항으로 금회 검토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름이 좋겠음

(2) 공동주택 신축 현상변경허가 신청 이력

- '12.04.18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 '12.06.13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 '13.03.13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13.04.10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6.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정자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정자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에 정자 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연번 | 대상문화재 | 신청인 | 신청내용 | 비고 |
|----|--------------------|-----|---|------------|
| 1 |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 ○○○ | <p><정자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85-1(문화재구역에서 약 13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 1동 - 규모 : 가로 4.5m × 세로 4.5m × 높이 4.7m - 기타 : 터파기 1m | 1구역 (보존구역)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3-07-037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16필지 1,931㎡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 지정면적 : 754필지 302,643㎡
 - 추가지정 신청면적 : 16필지 1,931㎡
- (4) 신청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3.4.15, '13.4.30)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번 면적(m ²) | 지정 면적(m ²) | 소 유 자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1 | 서울 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 83-60 | 도로 | 17 | 17 | | |
| 2 | | 83-63 | 도로 | 17 | 17 | | |
| 3 | | 152-8 | 대 | 178 | 178 | | |
| 4 | | 222-89 | 대 | 102 | 102 | | |
| 5 | | 131-20 | 대 | 145 | 145 | | |
| 6 | | 142-15 | 대 | 165 | 165 | | |
| 7 | | 259-32 | 대 | 112 | 112 | | |
| 8 | | 298-7 | 대 | 116 | 116 | | |
| 9 | | 222-94 | 대 | 106 | 106 | | |
| 10 | | 150-14 | 대 | 62 | 62 | | |
| 11 | | 222-32 | 대 | 145 | 145 | | |
| 12 | | 222-104 | 대 | 122 | 122 | | |
| 13 | | 279-46 | 대 | 162 | 162 | | |
| 14 | | 221-27 | 대 | 172 | 172 | | |
| 15 | | 130-41 | 대 | 142 | 142 | | |
| 16 | | 130-34 | 대 | 168 | 168 | | |
| 합계 | | | | 1,931 | 1,931 | | |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3-07-038

1. 창덕궁 경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내 일부 권역의 이동전화 통화 난청현상을 해소하고 안내판에 설치된 QR코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창덕궁 경내 이동전화 통화 난청지역인 궐내각사, 구선원전, 대조전, 부용지, 연경당 지역에 이동통신사의 협조로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 (1) 보 고 자 : ○ ○ ○
-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 (3) 보고내용 <경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3개>
 - 공사기간 : 2013. 5월(설치 승인 후 7일)
 - 소요예산 : 이동통신사 부담
 - 공사내용
 - 기존 선로 이용 및 일부구간을 굴착(L=300m, D=70cm)하여 통신선로 설치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위장형 안테나 및 중계기 설치(3개소, H=5m)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2. 서울 헌릉과 인릉 내 헌릉 동측 자연 계류 유실 법면 정비사업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사적 제194호 「서울 헌릉과 인릉」 내 헌릉 동측 자연 계류 유실 법면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12년 태풍 등의 피해로 유실된 헌릉 동측 자연 계류의 법면을 정비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 (1) 보고자 : ○○○
- (2) 대상 문화재명 : 서울 헌릉과 인릉(사적 제194호)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헌인릉길 34(산13-1)
- (3) 보고내용
 - 위치 : 헌릉 동측 자연 계류
 - 사업비 : 39,640,000원
 - 사업기간 : 2013. 6월 ~ 7월(착수일로부터 45일간)
 - 사업내용
 - 시설물공사 : 6개 지점 법면 정비(자연석 허튼쌓기), 종자부착 벗짚 덮기 87m²
 - 식재공사 : 국수나무(이식) 50주, 병꽃나무 190주, 산철쭉 140주, 진달래 105주
 - 부대공사 : 가교 설치 2개소, 자연석 운반 35m³, 지장 수목 벌채(신갈나무) 2주

라. 참고사항

- 관계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위원 : ○○○위원, ○○○위원
 - 자문일시 : 1차('12. 11. 19), 2차('12. 12. 3), 3차('13. 2. 29)
 - 자문내용 : 정비의 범위, 정비 방법 등에 관한 내용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 위임 확대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에 고시('08.8.1)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기 고시('08.8.1)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사항을 보완, 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화를 도모하고자 함
- ※ 대통령 지시사항('13.4.4) : “인허가 절차를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보고내용

- (1) 보 고 자 : ○ ○ ○
-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 (3) 보고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 시도 위임사항 개정 >
 - 위임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별첨 참조】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및 제4호(권한의 위임),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 개정내용
 - 1) 현상변경 허가사무의 변경허가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은 허가사항으로 간주 ⇒ 허가절차 미 이행시 문화재보호법 위반사항임)
 - ※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12.10월) : 점검대상 85건 중 변경허가절차 불이행 6건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준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확대

2)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의 허가 관련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 대상 문화재 : 총 19건/국보·보물 2건, 사적 3건, 천가·명승 14건/ '13.4월 기준

| 예상 문제점 | 대처 방안 |
|----------------------|--|
| · 지자체의 자의적 현상변경허가 처리 | · 동 기준은 타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08년 기준에서 규제 강화 어려움) |
|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의무 해태 |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총 19건(사적3건)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허용기준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한편, 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행정지도 병행 |

라. 조치계획

- 관보 고시 후 시행

※ 기 고시('08. 8. 1)된 시·도 위임 사무는 붙임 내용으로 대체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별첨 1]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 시도 위임 사항 -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 지역별 | 거리별 | 현 행('08. 8월 고시) | 개 정(안) | 비고 |
|---------------------------------|------------------|--|--|-------|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 50m이내 | ○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 ○ 좌 동 | |
| | 50m초과 100m이내 | ○ 건축행위 - 건축면적 : 8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 행위 | ○ 좌 동 ○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 조형물 보수·설치행위 | 보수 추가 |
| | 100m초과 200m이내 | ○ 건축행위 - 건축면적 25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 ○ 좌 동 ○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 조형물 보수·설치행위 | 보수 추가 |
| | 200m초과 500m이내 | ○ 건축행위 - 건축면적 425㎡ - 건축물 최고높이 17m ○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 ○ 좌 동 ○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 조형물 보수·설치행위 | 보수 추가 |
| | 100m초과 500m이내 | ○ 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 설치행위 ○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 ○ 좌 동 | |
| 관리·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 200m초과 500m이내 | ○ 농가주택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 ○ 좌 동 | |
| 적용범위 및 용어 해설 | | ○ 건물 최고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경사지붕의 경사비율 : 10:3이상 ○ 조경시설물 :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 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 ○ 조형물 :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 | ○ 좌 동 | |

※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에 따름

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시 시도 위임 사항

| 현 행('08. 8월 고시) | 개 정(안)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 동일 건축높이 내 허가면적의 10%범위 건축면적/연면적 증가(단, 1회에 한함) ○ 동일부지 및 동일 이격거리 내 건축물(시설물) 위치변경 ○ 건물규모(최고높이, 층수)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변경, 용도변경 ○ 건축물의 규모(높이, 층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하 ○ 건축물의 규모(높이, 층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단,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물의 규모(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 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 건물물의 규모(높이, 층수)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 변경의 경우 ○ 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의 경우 | <p>건축법 시행령 제12조의 '경미한 사항'에 준해, 변경허가 범위 조정</p> |